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397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전원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가. 별지1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21. 5. 3. 체결된
확정채권 양도계약 및 근저당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1. 5. 6.
접수 제22888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재판장 판사 한정석, 판사 김현희, 판사 강석규

별지1

근저당권부 채권의 표시

(목적부동산)

1. [토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 [토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2층	호
4.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2층	호
5.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2층	호
6.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2층	호
7.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3층	호
8.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3층	호
9.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3층	호
10.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3층	호
11.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4층	호
12.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4층	호
13.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4층	호
14.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4층	호
15.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5층	호

16.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5층	호
17.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5층	호
18.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5층	호
19.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6층	호
20.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6층	호
21.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6층	호
22. [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외 2필지 제6층	호
23. [토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4. [토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근저당권의 표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주식회사가 [] 주식
회사로부터 2021. 5. 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받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1. 5. 6. 접수 제22888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표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1. 1. 6. 접수 제487호로 설정 등
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
[]에 대한 최고액 1,350,000,000원의 채권 중 확정된 채권.

별지2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대부업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합니다)는 수익권증서를 발행하는 회사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진 자이고, 이 사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합니다)와 사업을 같이 하는 주체이고, 소외 E은 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이하 이 3인을 '피고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 피고 B는 수익권증서 판매자로서 채무초과 상태로 무자력인 C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설정한 별지 기재 채권최고액 금1,350,000,000원 근저당권에 대해 원고를 해 함을 알고 C로부터 2021. 5. 3. 확정채권양도 받아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해 행위의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2. 피보전권리

가. 원고는 피고측에게 **투자상품[(투자상품 제122호) F**, 금액 550,000,000원,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연 17%, 대출실행일 2018. 2. 8., 이자지급일 매월 15일, 만기 일자 2018. 7. 15. - 투자기간 5개월, 예상 총 수익 40,217,805원, 수익권증서판매자 B (주), 수익권증서발행자 C(주), 이하 '**투자상품 제122호**'라 합니다 / (**투자상품 제144호**) **G**, 금액 630,000,000원,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연 17%, 대출실행일 2018. 3. 9., 이자지급일 매월 15일, 만기일자 2018. 7. 15. - 투자기간 5개월, 예상 총 수익 37,558,354원, 수익권증서판매자 B(주), 수익권증

서발행자 C(주), 이하 '투자상품 제144호'라 합니다)광고를 보고,

피고측에게 투자상품대출실행금으로 2018. 2. 8. 금550,000,000원, 2018. 3. 9. 금630,000,000원, 합계 금1,18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갑 제1호증 송금 확인증), 피고측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상환하는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만기일자 2018. 7. 15.가 다가 오자 피고측은 원고에게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만기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여, 이에 원고는 만기연장을 거절하고 해당 금원을 상환받고자 하였지만, 피고측은 계속해서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2018. 12. 20. 아래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 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시하였습니다.

- 아 래 -

확인서

A 귀중

B 주식회사의 투자상품 F 122호(오억오천만원) 144호(육억삼천만원)건에 대한 (주) A의 연장 미 동의에 대하여 하기와 조치를 취하고 조건 부 동의를 독하는 데 하기와 같은 확인을 한다.

1. 법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최대한 조기에 리파이낸싱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2. 미 상환된 시기까지 27.9%를 적용하여 금리를 산정하기로 한다.
3. 2019 년 3월 20 일까지 미회수 시 투자금액 및 연체이자(27.9%) 상당액을 계산하여 B(주) 및 C(주)에서 A의 원리금 수취권을 인수함을 확인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각 연대보증인 E

나. 위와 같이 피고측은 확인서 내용을 통하여 2019. 3. 20.까지 미회수시 투자금액 및 연체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위 날인 및 서명한 이 사건 피고 B, C가 원고의 원리금 수취권을 인수하고 원고의 투자금원 상당액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각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소외 E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다. 그러므로 소외 C는 원고에 대하여 위 확인서에 기한 대금의 변제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원고의 피고측에 대한 소송상 청구

이에 원고는 피고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6669 지급명령신청하여 C와 소외 E은 금1,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금583,7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20. 8. 14. 각 확정되었으나(갑 제3호증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6669 지급명령결정 경정문 사본, 갑 제3호증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6669 지급명령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피고측은 해당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8916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지급명령결정에 이의제기하여 현재 원고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1593 사건으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 채권압류전부명령과 사해행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6669 사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해 C가 설정한 이 사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등기된 별지 기재 근저당권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05795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

였으나 2021. 3. 16. 인용된 이 채권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D에게는 2021. 4. 30. 송달되고, 채무자인 C에는 아직 송달되지 않은 사이에 C는 이 사건 피고 B에게 확정채권양도를 통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부기 등기 해주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05795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결정문 사본, 갑 제4호증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05795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사건 채권압류일부해제 및 전부일부포기 신청서 사본, 갑 제4호증의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05795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사건진행내용).

이러한 상황의 시간적인 공교로움은 달리 설명할 수 없고, 위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채권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압류전부명령의 존재를 인지한 소외 C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이 사건 피고 B에게 급하게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별지 기재 부동산의 C가 설정한 별지 기재 근저당권은 다른 재산을 찾기 어려운 C의 유일한 책임재산으로 C는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C 및 피고 B는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2021. 5. 3. 확정채권양도를 통해 이와 같이 이 사건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C와 피고 B 사이의 2021. 5. 3. 확정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5. 사해행위취소

가. 채무초과상태

C는 이 사건 피고 B와의 확정채권양도계약 당시 정보를 보면 결산기준일자 2017. 12. 31. 기준 이익이 약 500만원 가량 손해를 보고 경영하였고 2018. 12. 31. 기준 약 1

억 8천 1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는 경영을 하는 가운데, 2021. 5. 3.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2021. 5. 20. 기준일자로 휴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C가 휴업에 이르고 이 사건 별지 기재 부동산의 별지 기재 근저당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찾을 수 없는 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갑 제5호증 CRETOP C(주) 기업개요).

위와 같이 C는 휴업에 이를 정도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원고와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 B에게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를 통해 근저당권이전을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 자신에 대한 채권자가 변제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어서, C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C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이 진행될 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추가로 입증하겠습니다.

나. 피고측의 악의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C와 피고 B와의 근저당권이전은 C의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임이 분명하며, 그 근저당권자인 소외 C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이 사건 피고 B의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인 이 사건 피고 B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가) 별지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

21. 5. 3. 체결된 확정채권 양도계약 및 근저당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
지를 하라.

(다) 피고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21. 5. 6. 접수 제22888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위와 같이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